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4285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428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650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무, 배수형, 신현승, 이은성, 정유진, 문민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한상민, 안시은

판결선고 2022. 1. 13.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650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